



Web Contents



2024년 04월 30일 20시 19분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알림

2020.02.06 조회수 2569 등록자 이성희



사업장에서는 홍보자료 현장 게시 및 근로자에 대한 예방수칙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세한 안내를 원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(☎1339)와 상담이 가능하며, 국내 체류 외국인도 외국인 종합안내센터(☎ 1345)를 통해 3자 통화로 상담가능

※ 사업장 대응지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(향후 지속 업데이트 예정)

붙임 1. 사업장 대응 지침 요약 1부.

2. (일부변경)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(2판) 1부.

첨부파일 전체(Zip)다운로드	 사업장 대응지침 요약.hwp (1126 hit/ 59.5 KB) ↓ 미리보기
	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(2판).hwp (787 hit/ 3.94 MB) ↓ 미리보기

목록

이전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...	다음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예방을 위한 대응...
--	---

MokPo - Si
Web Contents

